

16세기 어느 도망노비 가족의 생존전략

- 1578년 노비결송입안(奴婢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이혜정*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6세기 소송(訴訟)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노비들 역시 당시의 법과 관행을 적극 이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영위하고자 노력한 행위주체였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부(慶州府) 안강(安康)에 살던 반춘(班春) 또는 다물사리(多勿沙里)라고 불리던 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은 노주(奴主)의 침학(侵虐)에서 벗어나고자 도망을 선택했지만, 결국 안정적 삶을 꾸리지 못한 채 대부분 사망하였다. 그녀는 이후 비교적 경제적 기반을 갖춘 시노(寺奴)와 혼인한 뒤,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삶을 유지해 갔다. 하지만 당시 도망노비들은 끊임없이 추쇄(推刷)와 횡탈(橫奪)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양반·권세가로의 투탁을 선택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호강인(豪強人)들은 양천미변(良賤未辨), 도망유루(逃亡遺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주제어: 도망노비, 생존전략, 양천미변(良賤未辨), 결송입안(決訟立案), 투탁(投託), 추쇄(推刷)

Escaped slave, survival strategy, trial-transcript (決訟立案), tutak (投託), chushe (推刷)

漏), 양처병산(良妻並産)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들을 자신의 소유노비로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각종 문서위조나 소송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노비들 역시 송정(訟庭)에서의 기만과 조작을 통해 소송을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1. 들어가기

조선시대의 판결문은 소송(訴訟)의 과정을 남김없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결송입안(決訟立案)과 같은 소송관계 문서의 경우, 소송의 진행과정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이들의 주장 내용이 가감 없이 기록되며, 맨 마지막에는 소송의 결과를 적었다. 이에 판결문을 따라 소송 과정을 천천히 되짚어 가면, 원고와 피고 중 한 쪽의 논거가 빈약해지기도 하고, 때로 앞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또 다른 증거 제출을 통해 소송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이처럼 판결문은 당시 법제도 운용의 실상과 심리(審理)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당시인의 법의식(法意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공초(供招) 과정에서 기록된 소송당사자의 발활[白活]에는 스스로의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겨있다.

본고에서는 판결문 속에 드러난 16세기 한 도망노비 가족에 주목하여,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질곡 속에서 어떻게 자신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며 살아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¹⁾

1) 조선시대 노비제도와 노비의 삶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전형택(1992), 『조선후기 私奴婢의 推刷』, 『全南史學』 6; 지승중(1995),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김용만(1997), 『朝鮮前期 私奴婢研究』, 집문당; 안승준(2007), 『조선전기 私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 경인문화사; 전경목(2012),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전북사학』 40; 이혜정(2012), 『16세기 奴婢의 삶과 의식세계-『默齋日記』를

2. 안강 정혜촌과 이전인(李全仁)

안강현은 경주부의 임내(任內)로, 비옥한 토질과 배산임수의 형세 등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갖춘 지역이다.²⁾ 이전인 가족이 안강 정혜촌에 터를 잡게 된 것은 그의 선대부터로, 부친 이언적(李彦迪)³⁾은 1532년 중앙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온 뒤 정혜촌에 별업(別業)을 마련하고 약 5년간 머물렀다. 이후 그가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강계부로 유배되자, 이전인은 배소(配所)에서 7년간 부친을 모셨고, 호상(護喪)과 운구를 비롯하여 3년의 여묘살이를 마쳤다.⁴⁾

이후 이전인 가족의 생활은 이들과 관련된 몇몇 문서를 통해 그 단편을 추적할 수 있다. 1560년 이전인은 경주관에 소지(所志)를 올려 처변(妻邊) 도망비 이금(李今)의 딸 반춘과 그녀의 자식, 동생 등을 자신의 소유노비로 결급(決給) 받은 뒤 이를 입안(立案) 받았다.⁵⁾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당시 慶州府는 府治(邑內)와 읍내의 외곽촌락(川北, 見谷面과 같은 지역), 安康縣·杞溪縣·神光縣과 竹長·省法·北安谷部曲 등의 任內지역으로 구획되었다[이수건(1990), 『良洞의 歷史의 考察』, 『良佐洞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pp. 38-47].
- 3) 李彦迪(1491-155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驪州. 字는 復古, 號는 晦齋 紫溪翁. 祖父는 參軍 壽會이고, 부친은 生員 蕃이며, 모친은 慶州孫氏 鷄川君 昭의 딸이다. 조선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532년 그는 安康 正惠村에 別業을 마련하였고, 이후 玉山別業은 그의 妻子 李全仁에게 상속되었다. 이언적의 家系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국학진흥연구소사업추진위원회 편(2000), 『古文書集成』 65-慶州 玉山 驪州李氏 獨樂堂篇(이하 『古文書集成』 65로 약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解題研究, pp. 3-33].
- 4) 1556년 9월 嫡母 咸陽朴氏는 家翁의 護喪과 運柩를 도맡았고, 三年廬墓와 祭葬之事를 한결같이 禮에 의거한 勞苦를 치하하며 이전인에게 奴婢 2口를 別給하였다 [『古文書集成』 65, 立案6-1, p. 382].
- 5) 당시 이전인이 받은 1560년 慶州府 決給立案은 앞부분이 일부 缺落된 채 현전한다. 한편, 결락된 이전인의 所志 내용은 이를 轉寫한 1578년 奴婢決訟立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古文書集成』 65, 立案7·立案7-1, p. 385; 『古文書集成』 65, 立案13,

당시 이전인의 소지에 의하면, 비 반춘은 오래전 어머니를 따라 동생들과 함께 도망쳤는데, 이후 어머니 이금은 죽었고, 그녀는 남편 서감동(徐甘同)과 주야정촌(注也井村)에 살다 노주를 찾아 왔다. 이에 그녀와 그녀의 자식, 동생들을 자신의 소유노비로 관에서 결급해 줄 것을 청하였다. 점련(粘連)된 비 반춘의 초사(招辭)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서록손(徐魯孫)이며 어머니는 비 이금으로, 부모 모두 창녕(昌寧) 태생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도망쳐 경주부로 옮겨왔고, 이후 안강에 살다가 상전에게 붙잡혔다. 또한 동생 수월(守月)과 주질금(注叱今)의 거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주부윤 권응정(權應廷)⁶⁾은 그녀가 도피은접(逃避隱接)한 이전인의 비자(婢子)가 명백하다며, 비 반춘과 그녀의 자식 2구(口), 동생 수월·주질금 등 노비 5구를 이전인에게 결급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주부윤 권응정의 도망노비 결급 과정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우선, 비 반춘의 진술과 노주 이전인의 주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그녀는 자신이 상전에게 붙잡혔다고[現狀] 진술한 반면, 노주 이전인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스스로 나타났다고[自現] 주장한 것이다.

만약 그녀의 주장처럼 비 반춘이 상전에게 붙잡혔다면, 이는 노주 이전인이 처변 유루도망노비를 추쇄(推刷)한 뒤 이를 관에서 결급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전인의 주장처럼 도망비가 스스로 노주를 찾아 왔다면, 이는 노주에게 추쇄된 경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녀는 스스로 상전을 찾아가 경주관아에서 공초를 받았고, 이는 노주가 도망비의 자현다짐[自現徬音]을 근거로 해당 노비를 결급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 반춘이 경주관아에서 공초 받은 사실은 동일하

p. 406].

6) 權應廷(1498-156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安東. 자는 士遇, 호는 默菴이다. 부친은 관찰사 希孟이며, 모친은 呂漢卿의 딸이다. 1528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及第하고, 이후 清要職을 두루 거쳤다. 1547년 良才驛壁書事件으로 유배되었고, 解配 이후 1557년 慶州府尹을 지냈다.

지만, 그녀가 관아에서 공초를 받게 된 계기—즉, 행위동기—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지니는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같이 엇갈리는 주장에 대한 별다른 의문 없이 결급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당시 경주부윤 권응정은 이전인의 소지와 비 반춘의 초사를 근거로 해당 노비를 결급하였다. 하지만 해당 노비에 대한 본문기(本文記)나 천적(賤籍), 전계문기(傳係文記) 등의 권원문기(權原文記) 없이, 노주의 소지와 도망비의 초사만으로는 결급의 충분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응정이 이전인에게 이들 노비를 결급해 준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보인다.

당시 투탁 양인이나 도망노비, 노양처병산(奴良妻並産)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文書)를 확보하는 일이었다.⁸⁾ 입안은 관권(官權)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공문서(公證書)로, 입안의 작성은 강력한 증빙력을 지닌 행위이기도 했다.⁹⁾ 즉, 이전인이 받은 1560년 경주부 결급입안은 경주부윤 권응정의 동의[또는 묵인]하에 작성되었고, 이는 입안을 통해 소유권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이전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또 다른 정보는 다음 2건의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인은 창녕에 사는 진사(進士) 하부(河溥)의 딸 진양하씨(晉陽河氏)와의 사이에서 이준(李浚)·이순(李淳) 형제를 두었는데, 이밖에 비첩(婢妾)에게서 얻은 얼자(孽子) 이몽호(李夢虎)가 있었다.¹⁰⁾ 1566년 그는 장남 이준에게 비 반춘의 1소생(所生) 노 말년

7) 이는 元告 李春壽 측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춘수는 경주부윤 권응정이 빗기[斜出]한 1560년 경주부 결급입안이 해당노비에 대한 本文記와 賤籍, 傳係文記 등 權原文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法例에 어긋난 立擘라고 주장하였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6-447].

8) 지승중(1995), pp. 115-120.

9) 조선시대 입안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최연숙(2004),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末乙年]을 분깃[分給]하고, 차남 이순에게는 비 반춘과 그녀의 2소생 노말이[末乙伊], 3소생 비 말금[末乙今], 동생 수월과 주질금을 분깃했다. 이듬해 이전인은 막내인 이몽호 몫으로 분재기 1도(度)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때 작성된 분재기에는 앞서 차남 이순에게 분깃된 비 수월과 주질금이 누락되었다. 이전인이 왜 이들을 분재대상에서 누락시켰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전인의 행위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이후 다른 문서들을 통해 찾아나가고자 한다.

3. 반춘(班春) 또는 다물사리(多勿沙里)

1576년 7월 경주부 안강 옥산서원(玉山書院)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포도장(捕盜將)을 대동하고 나타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서원으로 향하는 여자를 주가(主家)의 도망비라 주장하며 끌고 간 것이다. 이후 경주부에서는 그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졌다.¹⁰⁾ 원고 이춘수(李春壽)는 그녀가 비 동금(同今)의 딸 다물사리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 이준·이순 형제는 그녀가 비 이금의 딸 반춘으로, 옥산서원에 원속(院屬)된 비라고 주장하였다.

10) 이전인은 그의 嫡同生 李應仁의 戶婢 趙今과의 사이에서 孽子 李夢虎를 낳았다. 1565년 11월 이전인은 첩 조금과 일자 몽호를 자신의 노비 2구와 相換하는 文記를 작성하고 이를 입안하였다[『古文書集成』 65, 立案8-立案8-4, pp. 386-390].

11) 1576년 8월에 시작한 소송은 權原文記의 眞僞與否와 適法性 등을 둘러싼 元隻 간의 지루한 攻防으로 이어졌고, 결국 親着決折法에 의거하여 이준·이순 형제가 勝訴하였다. 본고에서는 소송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도망노비의 생존전략에 주목하여, 소송의 구체적 진행과정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시대 詞訟의 절차 및 본 소송의 진행과 결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였다[김경숙(2003), 『1578년 慶州 驪州李氏 李浚家의 奴婢決訟立案』, 『古文書研究』 23; 임상혁(2004), 『16세기 결송입안과 소송』,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심희기(2015), 『조선시대 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眞正性 문제들』, 『古文書研究』 46].

당시 소송을 맡은 경주부윤 조부(趙溥)¹²⁾는 2차례에 걸쳐 그녀를 공초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녀의 주장은 때로 사건의 앞뒤 순서가 어긋나거나 기억이 부정확한 등 조금 불완전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그녀 나이는 46살이며, 이름은 다물사리다. 아버지는 정병(正兵) 서록손이고 어머니는 똥금[屎寸], 똥금의 어머니는 기매(其每)이며, 부모는 고령(高靈) 태생이다. 나이 9살 무렵 그녀는 부모와 10살 된 동생 비 수월과 함께 초계(草溪)에 사는 상전 이춘수의 집으로 옮겨가, 사환되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동생들과 함께 자랐는데, 나이 12살 즈음 이들은 상전의 집에서 도망쳤다. 당시 동생 수월은 13살, 남동생 서손(徐孫)은 10살이었고 여동생 주질금은 1살이었다. 도망 이후 그녀 가족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경주 임내 안강에서 움막을 치고 살았다.

그녀 나이 22살 무렵, 계속되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한 기민진제(飢民賑濟)가 있었다.¹³⁾ 이때 그녀는 진제장의 감고(監考)이던 서감동을 만나 혼인했고, 이듬해 남편을 따라 정혜촌으로 옮겨 살았다. 이 해 그녀의 남동생 서손과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동생 수월은 16살 무렵 사노 허감동(許甘同)과 혼인했고, 이후 부모의 집에서 여동생 주질금을 데리고 살았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산 지 약 2년쯤 뒤, 이전인이 그녀와 같은 동리에 살게 되었다. 이후 햇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성주(城主)가 권부윤(權府尹)이었던 때, 이전인이 그녀를 ‘처변 도망비 이금의 딸 반춘’이라 멋대로 이름 지은 뒤, 공초를 받게 했다. 공초 당시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의 이름

12) 조부(趙溥, 생몰년 미상). 본관은 平壤. 字는 彥弘. 父親은 又新이며, 母親은 朴安命의 딸이다. 1552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였다. 1561년 林泉郡守로 나갔으나 寺僧들을 침학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았다. 1574년 정언·지평·사간을 지내고 이듬해 승지가 되었다. 1575년 10월 慶州府尹을 지냈다.

13) 경상도지역의 계속되는 飢寒으로 인해, 朝廷에서는 飢民救恤을 위한 賑濟場 설치와 재원 마련을 위한 納贖補職 등이 논의되었다[『明宗實錄』卷14, 明宗8年 2月 25日(壬申); 『明宗實錄』卷14, 明宗8年 5月 20日(乙丑); 『明宗實錄』卷15, 明宗8年 8月 27日(辛丑); 『明宗實錄』卷15, 明宗8年 12月 1日(癸酉); 『明宗實錄』卷16, 明宗9年 2月 9日(庚辰); 『明宗實錄』卷16, 明宗9年 2月 15日(丙戌)].

은 말하지 않았고,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서록손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동금의 딸 다물사리가 확실하며, 동생 수월은 지금 흥해(興海)에 살고 있고 또 다른 동생 주질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녀는 이전인의 비(婢)로 입안 받은 뒤에도 남편 서감동과 살았을 뿐, 8년이 넘도록 노주에게 신공(身貢)을 바치거나 사환된 일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는 사람[不干人]의 비라고 입안받았던 탓에, 약 6년 뒤 초계에 거주하는 상전 이춘수를 찾아가 관의 추열(推閱)을 받고, 이후 약 8년 동안 공역(貢役)을 바쳤다. 그런데 대략 5년 전 쯤 이전인의 아들 이순이 그녀를 옥산서원에 소속시켜 지금까지 서원에서 입역하다가, 지난 7월 상전 이춘수에게 추쇄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진술을 들은 송관(訟官) 조부는 그녀의 진술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에 관해 재차 질문하였다. 첫째, 앞서 그녀가 자신을 반춘이라며 경주부에서 직접 공초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다물사리라고 주장하니,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추궁하였다. 둘째, 당시 이전인이 몇대로 그녀를 반춘이라 이름짓고 입안 받았을 뿐, 자신은 아버지 서록손의 이름 이외에 어머니와 동생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고 이준 형제 측에서 제시한 1560 경주부 입안에는, 그녀의 아버지 서록손과 어머니 이금, 동생 수월·주질금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으니, 이를 사실대로 고하라는 것이다.

송관의 추궁을 받은 그녀는 당시 이전인이 자신을 반춘인 것처럼 입안했을 뿐, 자신은 다물사리가 확실하다며 주장하였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 관해, 그녀는 앞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1567년 노주 이춘수가 그녀를 추쇄했을 때, 아버지와 동생들의 이름을 적은 발기[花名件記]를 작성하여 남편 서감동에게 허급(許給)하였다는 것이다.¹⁴⁾ 이를 그녀가 지니고 있다가 이후 이전인의 아들 이준 형제에

14) 발기[件記]는 목록, 즉 리스트(list)를 말하는데, 노비의 이름을 적은 발기[花名件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奴主가 所有婢의 남편에게 이를

게 빼앗겼고, 따라서 1560년의 문서에 있는 이름은 빼앗은 발기를 보고 적어 넣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해명에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 그녀는 이전인이 자신을 반춘인 것처럼 꾸며 입안했다는 사실과 당시 그녀가 직접 반춘이라며 경주부에서 공초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왜 그녀가 이 같은 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는가에 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둘째, 1560년의 문서에 적힌 부모와 동생들의 이름은, 6년 뒤 노주 이춘수가 작성한 화명발기를 보고 작성된 것이라는 그녀의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그녀의 주장처럼, 6년 뒤인 1567년에 작성된 화명발기를 보고 1560년 결승입안에 아버지와 동생의 이름을 써 넣었다면, 이는 이 입안이 추후에 위조(偽造)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¹⁵⁾

마지막으로, 노주 이춘수가 그녀의 남편 서감동에게 화명발기를 허급했다는 주장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녀가 지니고 있다가 이준·이순 형제에게 빼앗겼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상 그녀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차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許給’하였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이는 奴婢文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 당시 그녀의 진술은 손아래동생의 나이가 자신보다 많다고 하거나, 남동생을 여동생이라 하는 등 다소 착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수와 이준 형제 양측은 그녀가 迷劣女人인 탓이라며, 그녀의 주장에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상반되는,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그녀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10-411;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13-414].

4. 노주(奴主)와 그들의 주장

1576년 7월 초계군에 거주하는 원고 이춘수는 관찰사의 데김[題辭]이 내려진 소지를 척재관(隻在官)인 경주부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소송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자, 동년 8월 모량역(毛良驛)을 지나가는 관찰사의 행차를 찾아가 또다시 소지를 올렸다.¹⁶⁾ 이에 8월 25일 경주부에서 원고 이춘수와 피고 이준·이순 형제가 시송다짐(始訟俵音)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후 관련문기의 제출과 원고와 피고의 진술 등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이춘수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옥산서원 앞에서 추쇄한 여인은 그의 비 동금의 딸 다물사리이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오래전 어미를 따라 도망쳤는데, 지난 1567년 다물사리가 스스로 노주를 찾아왔기에, 자신이 지닌 천적(賤籍)을 근거로 초계관에서 자헌다짐을 받고 이를 입안하였다. 당시 그녀는 이전인의 아들 이준이 그녀를 양친미변인(良賤未辨人)으로 생각하여 그녀의 근각(根脚)을 추열하려 하기에 이를 피해 노주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에 이춘수가 곧바로 경주부로 달려가 이준과 소송하고자 했는데, 당시 이준이 이춘수가 지닌 천적과 입안을 보고, 그녀가 이춘수의 비 다물사리가 확실하니 이를 돌려주겠다는 환급다짐(還給俵音)을 작성하여, 이를 경주부에서 입안 받았다. 이후 그는 비 다물사리에게서 매년 신공을 받았는데, 약 5년 전 즈음 이준 형제가 그녀를 옥산서원에 원속시킨 뒤 사환하니, 자신이 지닌 이준의 환급다짐을 근거로 다물사리를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16) 1576년 7월 27일 원고 이춘수는 관찰사의 議送이 내려진 소지를 隻在官인 경주부에 접수하였으나, 소송은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다. 자세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동일 접수된 玉山書院牒報에, 務停後부터 務開前에는 接狀하지 않음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당시 경주부윤 조부가 『經國大典』 刑典 停訟條에 依據하여, 소송을 退斥한 것으로 추정된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 400].

만면, 피고인 이준 형제는 원고 이춘수가 위조한 환급다짐을 가지고 자신의 비 반춘을 그의 비 다물사리인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비 반춘 또한 본주를 배반하고 이춘수에게 투탁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이준 형제는 이춘수가 지닌 환급다짐에 적힌 이준의 나이와 착명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이는 이춘수가 색리(色吏)와 짜고 작성한 위조문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 반춘 역시 본주를 배반하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녀의 공초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1. 다물사리의 주인 이춘수

초계군에 사는 원고 이춘수는 상당한 문벌과 가세를 지녔던 존재로 파악된다.¹⁷⁾ 이춘수의 조부는 비안현감(比安縣監)을 지낸 이구(李驪)로, 평산신씨(平山申氏)와의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었다.¹⁸⁾ 하지만 부친 이심(李審)은 아들 춘수가 채 10살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었지만, 이춘수는 이후 문과출신(文科出身) 현직 관료인 고모부들의 후견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민(田民)을 상속받았다.¹⁹⁾ 1540년

17) 이춘수의 5대조 李原은 1401년(太宗1) 佐命功臣 4等に 책록된 인물이며, 그의 4대조 李增은 安東의 入鄕祖이다. 이후 3대조 李洸이 臨淸閣을 짓고, 固城李氏 參判公派를 이루었다. 그의 가계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자세하다[문숙자(2008),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32].

18) 祖父 李驪에게는 嫡子女 외에 庶子 2男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소송과정에서 이춘수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和會白文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61년 이구의 嫡庶子女들이 작성한 和會白文記를 보면, 당시 화회 참여자는 장자 李審의 아들 李春壽, 사위 邊永淸과 張文輔, 서자 李玉氷과 李安의 代子 李春長이었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 414].

19) 安東 臨淸閣에는 이춘수의 曾祖母 南平文氏가 작성한 分財記가 남아있다. 이 분재기는 일부가 剝落되어 정확한 내용 파악이 힘들다, 당시 그에게 분깃된 노비의 數만도 어림잡아 50여 구를 넘는다[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2000), 『古文書

증조모 남평문씨(南平文氏)가 작성한 분재문기에는 나이 어린 이춘수 대신 고모부 변영청(邊永淸)이 착명서압(着名署押) 했는데, 이후 그는 의흥현감과 청송부사를 지냈다. 또 다른 고모부 장문보(張文輔) 역시 풍기군수와 진주목사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이춘수는 세력 있는 가문의 자제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렸고, 스스로도 자신이 비록 무식(無識)하지만 문벌의관(門閥衣冠)의 후예로 평생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⁰⁾

그러나 피고 이준·이순 형제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이춘수는 전 경주부윤 한옥(韓沃)²¹⁾의 인척(姻戚)으로, 당시 그는 여러 해 동안 경주부에 머물며 무뢰배를 거느리고 위세와 패리(悖理)를 저질렀다고 한다.²²⁾ 게다가 이춘수가 위조문기를 가지고 이준 형제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전임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²³⁾ 때에도 그가 위조입안(僞造立案)과 다짐을 가지고 이준 형제에게 소송하려 했는데, 이영감이 그의 간위를 알아채고 이를 접송(接訟)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준 형제는 이춘수가 원래 호부지인(豪富之人)으로, 색리(色吏)와 짜고 뇌물을 받아 남의 노비를 빼앗는 소송을 일삼는 자라고 주장하였다.²⁴⁾

集成』 49-安東法興固城李氏編(이하 『古文書集成』 49 약칭), 分財記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46-152].

20)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 409.

21) 韓沃(1505-157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淸州. 字는 啓彦. 부친은 承慶이며, 모친은 安湜의 딸이다. 1540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였다. 1565년 5월 慶州府尹에 부임하고, 1567년 11월 瓜滿으로 遞職되었다.

22) 守畬를 따라온 衙子弟과 姻婭·親戚 등을 통한 不法과 贈賂의 弊害는 당시 조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明宗實錄』 卷16, 明宗9年 4月 27日(丁酉)].

23) 李齊閔(1528-160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全州, 字는 景闇, 號는 西澗. 孝寧大君 補의 玄孫으로, 부친은 折衝將軍 贈 咸原君 顯이며, 모친은 蔡仲卿의 딸이다. 1558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고 이후 여러 文翰官을 거쳤다. 1571년 慶州府尹으로 外職에 나갔고, 이어 京畿監司에 발탁되었다.

24)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3-404.

원고 이춘수에 대한 이준 형제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춘수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가며,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이춘수는 1576년 7월과 8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경상감사(慶尙監司) 박소립(朴素立)²⁵⁾에게 소지를 올렸다.²⁶⁾ 그런데 그의 주장은 매번 조금씩 변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원고 이춘수의 처음 주장은 다음과 같다.²⁷⁾ 비 기매의 딸 동금과 동금의 딸 다물사리를 도망 이후 미처 찾지 못했는데, 1567년 비 다물사리가 스스로 나타나 천적에 근거해 초계관에서 자헌다짐하고, 이를 입안 받았다. 이에 이춘수는 경주부에 소지를 올려 이준을 추착(推捉)했는데, 당시 이춘수가 자신이 지닌 입안과 천적을 제출하자, 이준은 ‘이춘수의 비가 확실하니 환급(還給)하겠다’는 뜻으로 다짐했고, 이를 점련하여 경주부의 입안을 받았다.

이춘수는 그 후 매년 그녀에게서 신공을 받아 왔는데, 대략 4~5년 전 이준이 또다시 그녀를 빼앗아 사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녀의 남편이 죽자, 그녀를 자신의 노와 혼인시킨 뒤 그 소유전답 5~6결(結)을 자신의 호(戶) 짓기[衿記]에 몰래 올렸다고 한다.²⁸⁾

25) 朴素立(1514-158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咸陽. 자는 豫叔. 부친은 判書 世茂이며, 모친은 權仍의 딸이다. 1555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였다. 1567년 同副承旨로 재직하던 중 明宗이 후사없이 세상을 떠나자 院相 李浚慶, 李陽元 등과 宣祖를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공을 세워 大司成이 되었다. 1576년 慶尙監司를 지냈다.

26) 조선시대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隻在官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로 觀察使가 使議訟을 통해 재판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議訟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자세하다[한상권(2008),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外地部)』, 『역사와 현실』 69; 한상권(2014), 『조선시대 詞訟재판의 두 양태 -해남윤씨가 소장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4].

27) 1576년 7월 작성된 所志는 앞부분이 缺落되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8월에 작성된 소지와 그의 발필(白等)을 참조하여, 이춘수의 주장을 정리하였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0-403].

그런데, 동년 9월에 작성된 이춘수의 또 다른 소지를 보면, 그의 주장이 앞서와 조금 달라진 점이 주목된다.²⁹⁾ 그의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비다물사리는 어미를 따라 도망친 뒤 서감동과 혼인하여 여러 명의 자식을 낳고 상당량의 전답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1560년에 이준이 그녀를 이금의 딸 반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몰래 입안을 받았다. 이후 1567년에서야 사실을 알게 된 이춘수가 경주부로 달려와 소송하려 하자, 당시 이준이 그가 지닌 천적과 분깃문기[分衿文記]를 살펴보고 그녀를 돌려준다는 뜻으로 자복다짐을 하였기에, 이를 점련(粘連)하여 경주부에서 결급입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춘수의 주장이 달라진 까닭은 무엇이며, 또 변화된 주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처음의 주장대로라면, 이춘수는 1567년 초계군에서 받은 다물사리 자현입안과 천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앞서 그가 이준에게 환급다짐을 받았을 때, 자신이 지닌 입안과 천적에 근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초계군의 입안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결국 이춘수는 처음 주장과 달리, 그녀가 1560년에 노주를 배신하고 이름을 반춘으로 바꾸어 이준에게 투탁했고, 자신은 1567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안이 아닌, 분깃문기와 천적을 근거로 이준에게 환급다짐을 받았다고 말을 바꾸었다.³¹⁾

28) 衿記는 籌板이라고도 불렀다. 주판은 실제의 徵稅를 위하여 거주지별로 結稅額을 기재한 납세자 명단이다[이영훈(1980),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 29, pp. 92-94].

29)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8-409.

30) 이춘수는 1567년 초계군 입안을 제출하라는 경주부윤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이 지닌 文記가 많은 탓에 해당문서를 당장 찾아 제출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증거자료의 제시를 미루었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19-421].

31) 당시 그는 成化19년에 작성된 比其每 許與文記와 嘉慶 40년에 작성된 和會白文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14-416].

한편, 이어지는 그의 주장은 더욱 재미있어진다. 당시 그가 경주부에서 이준의 환급다짐을 점련하여 결급입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1560년 이전인이 그의 소지와 반춘의 초사만으로 경주부의 결급입안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이춘수가 그녀를 결급 받았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천적과 분깃문기, 도망비를 허접한 이준의 환급다짐 등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결급의 충분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그가 비 다물사리의 자현입안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서, 비 다물사리의 결급입안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으로의 변화가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이 역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반춘의 주인 이준·이순 형제

그렇다면 피고 이준 형제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이들 형제는 자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의롭고 바른 훈육을 듣는 산림(山林)의 집안에서 자라났고, 법정에서 소송하는 법은 조금도 익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³²⁾

하지만 원고 이춘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준은 그 세력을 믿고 선조명현(先祖名賢)의 가훈을 돌아보지 않은 채, 불의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앞서도 창녕에 사는 그의 사촌 하업수(河業守)의 비를 빼앗으려 하다가 큰 벌을 받게 되자, 간신히 사화(私和)³³⁾하여 이를 면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명현의 직계자손으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는 이준에 대해 소원(訴冤)하는 자들이 파다할 뿐만 아니라, 동생 이순 역시 능문간술(能文奸術)한 자로 형을 대신한다며 형제가 함께 송정을 드나들며 번갈아 자신을 무고(誣告)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과연 이춘수의 주장처럼, 이들 형제가 남의 노비를 빼앗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32)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1-402;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7-408.

33) 私和는 官에 고하지 않고 화해함을 뜻한다[지승중(1995), p. 358].

34)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8-409;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21-423.

셨는지 이제 이준 형제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준 형제는 이춘수가 위조한 환급다짐을 가지고 비 반춘을 그의 비 다물사리인 것처럼 꾸미고 있으며, 비 반춘 또한 본주를 배반하고 이춘수에게 투탁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형제가 주장하는 이춘수와 비 반춘의 공모가능성은 다음과 같다.³⁵⁾

우선, 이춘수가 처음 옥산서원 앞에서 반춘을 잡아간 뒤 3일 동안 그녀를 집에 가두었는데, 이때 이춘수가 반춘을 피어 그녀에게 다물사리 가족의 나이와 이름, 성별 등을 외우도록 했다는 것이다.³⁶⁾ 이 같은 공모의 증거가 바로 그녀가 경주부윤 조부에게 했던 진술로, 당시 그녀는 어미의 이름이 퉁금이라 하고 남동생 수손을 여동생이라 말했으며, 또 다른 동생 시월(十月)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자 얼결에 자신의 진짜 동생 수월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춘수의 외조 하구(河溝)는 이준 형제의 외조 하부(河溲)와 동향연족(同鄕連族)³⁷⁾으로, 이춘수는 평소 이준 형제의 외조 하부가 도망비 이금의 전계문기(傳係文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 이금의 딸 반춘을 빼앗으려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 반춘 또한 원래 창녕에 살았기에 평소 이춘수에 관해 익히 알고 있다가, 앞서 한부윤 재임 당시 이춘수의 소문을 듣고 그와 함께 모의하여 노주를 배반한 계획을 꾸몄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반춘이 이춘수와

35) 이준·이순 형제가 주장하는 이춘수의 違端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14-419;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21-423;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29-432].

36) 당시 奴婢相訟에서 許接人과 投托人이 함께 공모하여, 이들의 謀略에 의해 本主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文宗實錄』 卷7, 文宗1年 5月 9日(丙辰)].

37) 이춘수의 外祖 河溝(또는 河球)와 이준의 외조 河溲는 四寸兄弟로, 이춘수와 이준 형제는 外再從之間이 된다. 그러나 진양하씨 족보에는 하구의 사위 이십과 외손 이춘수만 기재되었을 뿐, 하부의 사위 이전인과 그 자손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하재규(2000), 『晉陽河氏大同譜』, 晉陽(晉州)河氏大同譜編纂委員會, pp. 9-36].

함께 모의하고 자신을 동금의 딸 다물사리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면, 스스로를 다물사리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이춘수가 제출하는 비 다물사리 관련 문기들 역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³⁸⁾

뿐만 아니라 이춘수는 지난 8월 모량역에서 관찰사 박소립에게 직접 원정(原情)을 올렸는데, 당시 이춘수는 ‘비 시월은 처음부터 도망치지 않았고, 지금 자신의 집에서 사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비 반춘이 앞서 경주부윤에게 공초를 받을 때, 그녀의 동생은 어미와 함께 도망하여 지금 흥해군 등명촌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 흥해군으로 가서 동생을 잡으면 그녀가 반춘인지 아니면 다물사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준 형제는 이춘수와 비 반춘의 공모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원고 이춘수가 제출한 증거문기와 그녀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관인 경주부윤 조부가 이춘수의 뇌물을 받고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다.³⁹⁾ 그러자 송관 조부는 관찰사 박소립에게 피혐공사(避嫌公事)⁴⁰⁾를 올린 뒤, 지금까지의 소송관련 문기를 모두 감봉(監封)한 뒤, 이를 관찰사에게 올렸다.

이처럼 경주부의 소송이 일시 정지된 동안, 피고 이준은 흥해군으로 가 도망비 수월과 그녀의 가족을 추쇄한 뒤 이를 입안받았다.⁴¹⁾ 당시 이

38) 이준·이순 형제는 자신들이 소송 등 법률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이들 형제는 상당한 법률지식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주이씨 독락당에는 1543년 李彦迪이 內賜받은 『大典後續錄』이 현전한다[장서각 고문서연구실 편(2007), 『바위틈에 핀 들꽃-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 p. 45].

39)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17-421.

40)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피하는 것을 흔히 ‘避嫌’으로,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歸咎’로 표현한다[임상혁(2004), pp. 331-332].

41) 이준이 興海郡에서 받은 立案은 1576년 12월 16일 慶州府에 제출되었고, 이후 또 다른 관련문기와 함께 1軸으로 묶어 上使되었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 421].

준은 수월의 도후입안(逃後立案) 이외에 여러 통의 문서를 작성했는데, 남아있는 이 문서들은 비 반춘과 수월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을 함께 전한다.⁴²⁾

1576년 10월 호노 숙복(叔福)을 데리고 흥해로 간 이준은 비 수월의 가족을 잡아들인 후, 흥해군에 도망노비에 관한 결급을 청하는 소지를 올렸다.⁴³⁾ 지난 1560년 경주부에서 비 반춘과 그 동생을 결급 받았는데, 지금까지 동생 수월과 주질금은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 비 수월이 흥해군에 은접(隱接)하고 있으니, 그녀를 잡아 취초(取招)한 뒤 입안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같은 날 흥해군수 송응수(宋應秀)는 도망비 수월을 공초했었는데, 그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⁴⁴⁾

그녀의 이름은 수월이고 나이는 40살이다. 아버와 어미의 이름은 그녀가 어릴 때 죽어 알지 못하며, 안강 땅으로 부모를 따라와 그 곳에서 자랐다고 한다. 부모가 죽은 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겨우 연명하다가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마석(麻石)이란 자를 만나 혼인했다. 그녀의 1소생 비 수대는 20살, 2소생 노 안석(安石)은 15살, 3소생 비 만대(萬代)는 6살, 4소생은 아직 이름도 짓지 않았고, 5소생은 지금 임신 중으로, 다섯을 낳아 길렀는데 지금 모두 살아있다. 그녀의 딸 수대는 윤여주(尹如舟)와 혼인해 살고, 그녀와 남편 마석, 나머지 자식들은 같은 마을의 이인연(李仁連) 집에 붙어살고 있다. 동생 다물사리는 지금 경주부에 잡혀 있으며, 여동생 주질금은 어릴 때 안강에서 죽고 그 밖의 다른 동생은 없다고 한다. 즉, 비 수월은 자신의 동생이 경주부에 사는 다물사리라고 주장한 것이다.

42) 당시 흥해군에서 작성된 여러 장의 문서들이 여주이씨 독락당 문서에 남아있다. 이들 문서는 文記僞造의 가능성과 함께, 당시 立案행위가 지닌 公證力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다른 논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3) 『古文書集成』 65, 立案10, p. 394.

44) 『古文書集成』 65, 立案10-1, p. 395.

하지만 이준은 자신의 동생이 다물사리라고 주장하는 수월의 초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결국 홍해군수는 공초를 마친 수월을 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이준의 호노 숙복은 관에 소지를 올려, 도망비 수월이 근각을 직초(直招)하지 않아 옥에 가두었는데, 만삭의 몸이니 그녀 대신 남편 마석의 초사를 받고 그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⁵⁾

한편, 풀려난 수월은 이날 홍해군에서 다시 공초를 받았다. 그런데 이때 수월의 초사는 앞서 그녀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⁴⁶⁾ 그녀의 이름은 수월이며 나이는 37살이다. 어머니는 반비(班婢) 이금, 아버지는 백성(百姓) 서록손이며 부모는 창녕 태생이다. 상전인 진사댁에서 사환되다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떠돌아 다녔고, 이후 경주 안강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후 부모와 남동생 서손이 일시에 죽고, 언니 반춘은 기민감고 서감동과 혼인하여 정혜리에 살다가 상전 하진사의 사위 이전인에게 잡혀 사환되다 이번에 옥산서원에 정속되었다.

그녀는 김해의 기관(記官) 배빈(裴濱)의 호노 마석이 김해에서 떠돌다가 안강의 기민막에 왔을 때 만나 혼인했고, 이후 영해·영덕 등지를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남편 마석의 상전에게 붙잡혀 김해의 주가에서 10여 년 살았고, 그 뒤 등명리에 있는 박양손(朴陽孫)의 집에 4년간 붙어살았다. 작년부터 같은 마을의 이인년 집으로 옮겨 살았는데, 지금 이전인의 아들 이준에게 잡혔다고 한다. 그녀의 1소생은 비 안덕(安德)으로, 동리에 사는 윤여주가 첩으로 삼아 살고 있으며, 2소생은 노 안석, 3소생은 비 만대이다. 또한 여동생 주질금은 앞서 안강에서 살 당시 이미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월은 왜 자신의 초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었을까? 또 수월의 두 가지 진술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수월의 마음을 바꾸게 한

45) 이는 다음날 작성된 호노 숙복의 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古文書集成』 65, 立案11-1, p. 398].

46) 『古文書集成』 65, 立案12, p. 399.

결정적 요소는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수월의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의 내용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초사에 의하면, 그녀는 1소생 비 수대(20살), 2소생 노 안석(15살), 3소생 비 만대(6살), 4소생 무명(1살), 5소생은 임신 중이다. 당시 그녀는 자식 다섯을 낳아, 지금 모두 살아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작성된 두 번째 초사에는 그녀의 1소생 비 안덕, 2소생 노 안석, 3소생 비 만대만 나타나며, 이들의 나이는 밝히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월은 자신의 두 번째 초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4소생 무명이와 뱃속의 아이의 존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1578년 노비결송입안에 후록된 노비질(奴婢秩)이다.⁴⁸⁾ 이 중 비 수월의 자식들은 그녀의 1소생 비 안덕(24살), 2소생 노 안석(16살), 3소생 비 만대(4살) 등 3구가 확인된다. 그런데, 1576년 당시 6살이던 비 만대의 나이가 2년 뒤에는 4살로 줄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그녀의 3소생 비 만대가 죽자, 이름 없던 4소생 무명이가 언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또 임신 중이던 그녀의 5소생은 이후 사망했을지 모른다. 그럴 법 하다.

47) 비 수월이 허룻밤 사이에 자신의 주장을 바꾼 까닭은 그녀가 그 반대급부로 무언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그녀는 이준이 원하는 내용으로 또다시 흥해군의 공초를 받고, 그 대가로 그녀의 초사에서 2명의 자녀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48) 1578년 노비결송입안의 노비질에는 이준의 몫으로 비 반춘의 1소생 노 말년과 비 수월의 1소생 비 안덕, 이순의 몫으로 비 이금 1소생 반춘, 2소생 수월, 3소생 주질 금과 비 반춘의 2소생 노 말이, 3소생 비 말질개 그리고 비 수월의 2소생 노 안석, 3소생 비 만대가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반춘 뿐만 아니라 수월까지도 이미 사망했다고 진술한 그녀들의 동생 주질금이 여전히 문기에 남아있음이 주목된다[『古文書集成』 65, 立案13, p. 441].

5. 이중전략과 배신⁴⁹⁾

비 반춘이 남편 서감동을 만난 곳은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한 진제막(賑濟幕)이었다. 당시 경상도지역은 계속되는 흉황으로 인해 진제장이 설치되었는데, 흥해관(興海官)에 소속된 시노(寺奴) 서감동은 당시 감고(監考)를 담당하였다. 그녀는 혼인한 이듬해 남편 집이 있던 정혜리로 옮겨 살았는데, 이후 이전인 가족이 창녕에서 정혜리로 옮겨왔다고 한다.

1560년 7월 이전인은 경주부에서 처변 유루비인 비 반춘과 그 소생 및 동생에 대한 결급입안을 받았는데, 그녀가 남편 서감동과 함께 자현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그녀는 이전인에게 투탁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이에 관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만, 그녀의 속사정은 또 다른 주인이라는 이춘수 쪽 주장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이춘이 그녀를 양천미변인으로 의심하여, 경주부에 근각을 추열해 달라고 요청하려 한다기에 노주를 찾아왔다’는 그녀의 진술은, 노비들이 도망 이후 겪게 되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 준다. 이들은 노주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들이 머무는 곳의 호강인(豪強人)에게도 침학의 대상이

49) 본 장은 1578년 노비결송입안과 『古文書集成』 65에 수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50) 그녀의 행위가 투탁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녀는 자신이 노주에게 現現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노주 이전인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自現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와 노주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당시 작성된 경주부 결급입안은 입안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건이었고, 그녀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노주 이전인의 표현은 결급입안의 작성과정에 그녀와의 합의가 일정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1560년 경주부 결급입안은 그녀의 협조-스스로를 반춘이라 주장하는-를 전제로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반면, 노주에게 추쇄되었다는 그녀의 주장은, 당시 자신이 입안의 결급과정에 자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음을 애써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그녀가 왜 스스로를 반춘이라 인정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침묵이 곧 당시 그녀의 행위가 이전인에게로의 투탁이었음을 반증한다.

되었고,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해 권세가로 투탁한 뒤 이들의 완호(完護)를 받아야 했다. 이때 투탁을 받아들인 허접인(許接人)은 완호의 반대급부로 이후 투탁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한 반면, 투탁인들은 이들에게 일정정도 완호반기를 원할 뿐 이들의 소유가 되려 하지는 않았다.⁵¹⁾

이들은 허접인을 고르는 일에 매우 신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원하는 허접인은 투탁자를 관이나 타인의 침탈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가급적 경제적 침탈이 없어야 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전인은 당시 이들 부부에게 매우 이상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이전인은 입안 이후 신공을 거두거나 사환하는 등 경제적 침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투탁과 허접의 아슬아슬한 균형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는 아마도 1566년 8월에 이루어진 이전인의 재산분재가 그 계기로 보인다. 분재에 앞서 이전인은 그녀와 그 소생을 확인한 뒤 이들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⁵²⁾ 이로써 앞서 이전인이 받은 1560년 경주부 결급입안과 분재기는 이후 자손 대대로 비 반춘과 그 소생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기가 되었다.

이들 부부는 이후 앞서의 투탁을 무효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죽지 못하는 게 恨’이라며 파산 지경에 이르도록 사방에 뇌물로 청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물에서 벗어날 계획을 꾸민 것은 온 경주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이준·이순 형제의 주장은, 당시 그녀 부부의 행동을 증언한다.⁵³⁾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이들 부부는 매우 적극적

51) 본고에서는 투탁을 행하는 주체를 投托人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주체를 許接人으로 표현하였다. 이상 투탁과 허접의 길항관계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다룬다[이혜정 (2009), 『『默齋日記』를 통해서 본 16세기 婢夫·奴妻의 삶』 『韓國史研究』 147, pp. 210-220].

52) 이전인은 분재에 앞서 비 반춘과 그 소생을 推尋한 것으로 보인다. 1566년 8월에 작성된 分財記에는 1560년 입안 작성 이후 출산한 그녀의 3소생 비 末乙今の 존재가 확인된다[『古文書集成』 65, 分財記5, p. 600].

53)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29-432.

으로 자신을 보호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결국 이들 부부는 한부윤의 이자제(衛子弟)로 경주부에 머물던 이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이춘수와 새로운 공모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위조문기를 이용한 소송이었다.⁵⁴⁾ 우선, 이춘수는 경주부 형방(刑房) 최언명(崔彦明)과 공모하여, 이준 명의의 환급다짐을 위조하였다.⁵⁵⁾ 이후 이춘수는 자신이 지닌 비 다물사리의 천적과 분재기, 이준의 환수다짐 등을 근거로, 비 다물사리를 거집(據執)하고 있는 이준과 소송을 시도하였다.⁵⁶⁾ 하지만 경주부윤 이제민은 그를 접송(接訟)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이들은 또 다른 수령이 부임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춘수의 비 다물사리가 되고자 했을까? 그녀가 이준 형제의 비 반춘이 아닌, 이춘수의 비 다물사리로 살고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그녀가 자신을 비 다물사리라고 말로 주장할 뿐, 다물사리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문기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⁵⁷⁾

여기서 그녀의 이중전략이 드러난다. 우선, 그녀는 앞서의 투탁을 무

54) 이들 부부와 이춘수가 언제부터 함께 모의했는지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이준이 전임 경주부윤 이제민의 재임 시(1571/8-1574/2)에도 이춘수가 僞造文記를 가지고 이준과 소송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古文書集成』 65, 立案 13, pp. 401-402].

55) 『古文書集成』 65, 立案13, pp. 408-409.

56) 당시 환수다짐 위조여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은 대체로 원고 이춘수 쪽이 유리한 입장이었다. 피고 이준은 자신의 나이와 着名署押이 다르다는 근거로 이를 위조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담당색리, 官印, 筆跡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위조가 아님이 인정되었다. 한편, 이춘수는 이준이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부터 차후 이를 위조문기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나이와 착명서압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역공세를 펼쳤다[심희기(2015), pp. 92-96].

57) 그녀의 진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녀는 자신이 이춘수를 스스로 찾아가 초계군에서 推關받았다고 진술했을 뿐, 立案을 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음이 주목된다.

효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이춘수의 비 다물사리로 만든다. 가짜 노주 이춘수는 위조된 이준의 환급다짐을 비롯하여, 그가 지닌 진짜 비 다물사리의 전제문기, 천적, 분재기 등의 권원문기, 자신이 다물사리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준·이순 형제와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후 소송에서 이긴 이춘수가 그녀를 남편 서감동에게 허급하면, 그녀는 다물사리라는 새로운 자신의 근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그녀의 이중전략은 앞서 그녀가 말한 화명발기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 보다 명확해 진다. 그녀는 남편 서감동이 생전에 노주 이춘수에게서 화명발기를 허급 받았고, 이를 자신이 지니고 있다가 이준·이순 형제에게 빼앗겼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주장처럼, 이춘수가 남편 서감동에게 그녀를 허급했다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반춘이 아닌, 이춘수의 비 동금의 딸 다물사리임을 증명해야 했다. 즉, 그녀의 가짜 노주 이춘수가 맡은 역할은, 위조된 ‘환급다짐’을 가지고 이준 형제와의 소송을 통해, 그녀가 이춘수의 비 다물사리임을 증명해 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녀는 ‘다물사리’라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⁸⁾ 이후 그녀는 반춘이 아닌 다물사리로 살아갈 것이고, 이춘수가 허급한 비 다물사리의 권원문기는 그녀의 새로운 근각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1575년 11월 남편 서감동이 사망하자, 이듬해 이준은 그녀를 자신의 노와 혼인시킨 후 자신의 집에 살도록 했고 그녀 소유의 전답 5~6결을 자신의 호에 붙였다. 결국 남편 서감동의 사망 이후, 그녀는 자신의 소유 재산마저 노주

58) 권내현은 戶籍에 이름이나 職役, 나이 등을 달리 기재하는 행위는 ‘의도된 혼란’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롭게 출발하거나 성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지적하였다[권내현(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 역사비평사, pp. 106-109].

에게 빼앗길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편, 1576년 7월 이춘수는 관찰사 박소립에게 소지를 올리고, 이준 형제와의 소송을 시작하였다. 소송에 앞서 이춘수는 3일간 그녀를 잡아 가둔 뒤, 그녀가 재차 이준과의 소송에 나서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그렇다면, 이춘수는 왜 그녀의 협조가 필요했을까? 우선, 이춘수는 그녀가 자신이 다물사리임을 인정해야 이준 형제와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다물사리가 아니라면, 이춘수는 그가 지닌 이준의 ‘환급다짐’만으로는 소송을 시작할 수 없었고, 결국 이춘수의 소송은 처음부터 그녀와의 공모라는 전제 위에 구상되었다.

한편, 이준·이순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송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우선, 이들은 그녀가 외조 하부변 도망비 이금의 딸 반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문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그녀가 정말 반춘이라 해도, 이는 외조 하부의 자손들과 그 소유권을 나누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들 형제 역시 비 반춘의 전계문기를 제출하는 일을 피일차일 미루면서, 이춘수가 제출한 이준의 환급다짐이 위조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실제 이들 형제에게는 부친 이전인의 결급입안 이외에 그녀의 정당한 소유를 증명할 만한 마땅한 문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춘수는 앞서 이전인의 결급입안이 입안으로서의 증빙력이 부족한 입지(立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주도해 나갔고, 소송의 초반부는 이춘수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편 이춘수는 자신이 이준 형제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비 반춘과의 공모를 배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9) 그녀의 이중전략은 아마도 남편 서감동의 주도하에 계획되었을 것이다. 당시 그녀가 남편 서감동의 도움 없이 양반인 이춘수와 공모하여 이준형제와 소송을 벌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서감동의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이후 이춘수는 그녀를 설득하여 재차 이준형제와의 소송을 시도하였다. 한편, 공모한 이춘수에게 배신당한 그녀는 결국 자신의 동생 수월이 흥해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춘수와의 공모를 깨뜨렸다.

이춘수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의 진술을 바꾸어 나갔다. 그는 이준에게 받은 환급다짐을 경주부에서 입안 받았다는 처음의 주장을 반복하고, 당시 자신이 비 다물사리의 천적과 분깃문기, 그리고 이준의 환급다짐을 점련하여 경주부에서 결급입안을 받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나갔다. 즉, 이춘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준 형제의 약점을 틈타, 자신이 지닌 각종 문기와 스스로를 비 다물사리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그녀를 자신의 소유노비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이춘수의 배반으로 그녀와 이춘수의 공모가 결렬되자, 그녀는 동생 수월이 흥해군에 살고 있음을 실토해야 했다. 그녀는 이전까지 동생 수월과 주질금의 근각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이춘수의 배신으로 인해, 이춘수의 노비가 될 처지에 이르자 동생 수월의 존재를 밝힌 것이다. 그러자 이춘수는 이후 초계군으로 도망가, 이리저리 칭탈(稱頔)하며 더 이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 들었다.

한편, 흥해군으로 비 수월을 찾아간 이준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다. 비 수월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지 모르며, 그녀 동생의 이름은 다물사리이고 지금 경주부에 수금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준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한, 그녀와의 특별한 계약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는 하루 만에 앞서와 전혀 새로운 내용이 담긴 비 수월의 초사를 받아낼 수 있었다.⁶⁰⁾ 이후 이춘수는 더욱더 재판에 나서기를 꺼려했고, 재판은 결국 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에 따라 이준 형제의 승리로 끝났다.

6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의 3소생과 5소생이 그 계약의 대상인지 모른다. 아니, 이보다 앞서 그녀의 동생 주질금 역시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어디론가 누락되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良賤未辨人의 존재에 대한 상상은 당시 노비의 도망행위를 해석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

6. 나가기

이상은 16세기 경주부에 거주한 한 도망노비 가족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당시 노비들은 노주의 침학에서 벗어나고자 도망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도망 이후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도망노비들은 노주의 끊임없는 추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주변 호강인의 침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결국 이들은 권세가로의 투탁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완호를 받아야 했다.

한편, 도망노비를 받아들인 허접인은 이후 이들을 자신의 소유노비로 확보하고자 했지만,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기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들은 지방 각관의 수령이나 관찰사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각종 증빙문기를 만들기도 했고, 때로 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은 양반층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투탁 등의 방식으로 허접인의 완호를 받던 도망노비들 역시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삶을 위해 거짓이나 문서위조,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자 료】

- 『古文書集成』 49-安東法興固城李氏編.
『古文書集成』 65-慶州玉山驪州李氏獨樂堂篇.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논 저】

- 권내현(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 역사비평사.
김경숙(2003), 「1578년 慶州 驪州李氏 李浚家の 奴婢決訟立案」, 『古文書研究』 23.
김용만(1997), 『朝鮮前期 私奴婢研究』, 집문당.
문숙자(2008),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32.
심희기(2015), 「조선시대 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眞正性 문제들」, 『古文書研究』 46.
안승준(2007), 『조선전기 私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 경인문화사.
이수진(1990), 「良洞의 歷史의 考察」, 『良佐洞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영훈(1980),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 29.
이혜정(2012), 『16세기 奴婢의 삶과 의식세계-『默齋日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9), 「『默齋日記』를 통해서 본 16세기 婢夫·奴妻의 삶」, 『韓國史研究』 147.
임상혁(2004), 「16세기 결송입안과 소송」,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전경목(2012), 「도망노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전북사학』 40.
전형택(1992), 「조선후기 私奴婢의 推刷」, 『全南史學』 6.
조규환(1998), 「16세기 賑濟政策의 변화」, 『漢城史學』 10.
지승중(1995),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최연숙(2004),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한상권(2008),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外知部)」, 『역사와 현실』 69.

원고 접수일: 2015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0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0월 29일

ABSTRACT

Survival Strategy of a Fugitive Slave Family in the 16th Century
- Focusing on Nobigyeolsongyippan (奴婢決訟立案) in 1578

Lee, Hye-jeong*

Written judgments from the Joseon Dynasty are very useful resources for understanding the full accounts of events in that they thoroughly record the process of litigation. Tracing the litigation process through the written judgment, it can be observed that the basis of an argument from either side of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sometimes weakens. In other times, efforts to lead the litigation in one's favorable way by often turning over the previous arguments or submitting other evidence can be seen. The written judgment from the time thus becomes an valuable resource.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the slaves were also a main body that actively used the laws and customs at the time for the purpose of leading a safer life, by examining the voice of a female that is contained in a litigation document from the 16th century.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